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공소청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 과정에도 적용하고, 현행 검찰청의 발달장애인 조사 또는 심문을 위한 전담검사 규정을 공소청의 전담검사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전담수사관 규정으로 변경함(안 제12조 및 제13조).
- 돌봄 공백이 발생한 발달장애인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, 그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9조의5 신설).
- 긴급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1조제5항 신설)

II. 검토의견

- 안 제29조의5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서비스는 현행법 제29조의31)의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성격의 규정이므로,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에 적용되는 복지서비

1) 제29조의3(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발달장애인(이하 “최종증 발달장애인”이라 한다)에게 일상생활 훈련, 취미활동, 긴급돌봄,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·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(이하 “통합돌봄서비스”라 한다)를 제공할 수 있다.
②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,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스 신청,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, 벌칙 조항의 적용 대상에 안 제
29조의5의 긴급돌봄서비스도 포함할 필요가 있음. 이에 보건복지부
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마련함.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
제18조(복지서비스의 신청) ① 발달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(이하 “복지서비스”라 한다), 「사 회보장기본법」 제3조에 따 른 사회보험,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신청 하여야 한다. 1. 2. (생략) 3.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 달 지원, 제27조에 따른 문 화·예술·여가·체육 활 동 등 지원,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·방과 후 활동 지원, 제29조의3에 따 른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 합돌봄 지원, <u>제31조</u> 에 따 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 원 및 제32조에 따른 휴식 지원 등 4. (생략)	제18조(복지서 비스의 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	제18조(복지서비스의 신청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29조의5에</u> <u>따른 긴급돌봄지원, 제31</u> <u>조에</u> ----- ----- 4. (현행과 같음) 제37조(서비스의 제공 등) ① ----- ----- <u>제29조의3, 제29조의5</u> <u>및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37조(서비스의 제공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 9조의2, <u>제29조의3</u> 및 제30 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경 우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 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 2조제2호의 사회서비스이용	제37조(서비스 의 제공 등) ① (현행과 같음)	제37조(서비스의 제공 등) ① ----- ----- <u>제29조의3, 제29조의5</u> <u>및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
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. 제42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, 제29조의2, 제29조의3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서비스 또는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자 2. (생략)	제42조(벌칙) (현행과 같음)	----- ----- 제42조(벌칙) ----- ----- ----- ----- 1. ----- ----- -----제29조 의3, 제29조의5 및----- ----- 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

- 그 밖에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, 수정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주서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윤상열)